[서식 예] 양수금청구의 소(임가공료채권의 양수)



소 장

원 고 ○○○ (주민등록번호)
○○시 ○○구 ○○로 ○○(우편번호)
전화·휴대폰번호: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피 고 ◇◇◇ (주민등록번호)
○○시 ○○구 ○○로 ○○(우편번호)
전화·휴대폰번호: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양수금청구의 소

청 구 취 지

- 1. 피고는 원고에게 금 ○○○원 및 이에 대한 20○○. ○○. ○○.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
- 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- 3.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.

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

청 구 원 인

- 1. 원고는 소외 ◈◆◈에 대하여 금 ○○○원의 대여금채권이 있는데, 소외 ◈◈ ◈가 위 대여금채권을 갚을 날짜가 되어도 갚지 못하므로, 소외 ◈◈◈로부터 소외 ◈◈◈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공작기계임가공료 금 ○○○원의 채권을 양수 받고, 소외 ◈◈◈는 20○○. ○. ○. 피고에게 위와 같은 채권양도양수사 실을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으며, 그 통지서는 20○○. ○ ○. ○. 피고에게 도달되었습니다.
- 2. 그 뒤 원고는 피고에게 위 양수금채권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현재까지

계속 미루기만 하고 위 양수금채권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.

3.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양수금 ○○○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채권양臺 지서가 피고에게 도달된 날의 다음날인 20○○. ○○. ○○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%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.

입 증 방 법

1. 갑 제1호증 채권양도양수계약서

1. 갑 제2호증 채권양도양수통지서

1. 갑 제3호증 우편물배달증명서

1. 갑 제4호증 임가공료지불각서

1. 갑 제5호증 변제최고서(내용증명우편)

첨 부 서 류

1. 위 입증방법 각 1통

1. 소장부본 1통

1. 송달료납부서 1통

20 O O O . O O . 이 연구 연구 연구 (서명 또는 날인)

		corkraft
관할법원 ※ 아래(1)참조	소멸시효	의 ○ ○년(□ 조멸시효일람표,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
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	수만큼의 부본	제출
비 용 · 인지액 : ○○○원(□ · 송달료 : ○○○원(□		아래(2)참조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)
· 채권양도는 구 채권자인 성을 유지하면서 전자로 발한다 할 것이고, 채권영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된 '지명채권의 양도는 이를 자기타 제3자에 대항하지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 '확정일자'란 증서에 대하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는 능한 확정된 일자를 가려의하여 이루어짐으로써 증서에 확정일자를 얻은 취득한다(대법원 2010. 5. '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에 채무자의 승낙서이기 호사로부터 사서증서 인물서류인 임차인명의변경 정일자에 해당한다고 봄('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사정이 없는 한 채무변제 추정할것이지 채무변제에 있으면 바로원래의 채권역을 변제받은 때에 비로소에게 채무변제에 '갈음하이 없는 한 채권양도의 무는 소멸하는 것이고 그가 소멸한다고 할 것은 '	부터 2주 이내(독양도인과 신 채권 양도인과 신 채권 부터 후자에게로 여름(대법원 2002. 4. 채무자에게 통지하여 채권의 자성한 일기 작성한 일기 작성한 일기 자명채권의 경우에는 그 일기 지문권자로부터 등을 받은 사안에게 대한 민대법원 2010. 5.13. 라면제와 관련하여 대한 당음한 개권의 상무한 채권의 양수한 채권의 양수한 채권의 양수한 채권의 아니다.이 경우 대	그 지분을 양수한 자가 지분양도서류 변경 계약서를 첨부하여 공증담당 변 서, 그 인증서에 기입한 날자는 첨부 법 부칙(1958.2.22.)제3조 제4항의 확



※ (1) 관 할

- 1. 소(訴)는 피고의 보통재판적(普通裁判籍)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,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,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,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.
- 2.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.
- 3. 따라서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의무이행지(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하지만, 그 밖의 채무 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하므로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자기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: 민법 제467 조 제1항, 제2항)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.

※ (2) 인 지

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. 다만,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·직불카드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,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(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).

●●●분류표시 : 민사소송 >> 소의 제기 >>이행의 소